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 <개정 2024. 2. 13.>

취업지원 신청서

※ 제4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*	Ĺ]에는	해당되는	곳에	"√"	표시를	합니다.	
---	---	-----	------	----	-----	-----	------	--

<u>※</u> []에는 해'	당되는 곳에	√ 표시들 압니나.				(4폭 중 1폭)		
접수번호		접수일시			처리기간	1개월		
	성명		주민	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				
①신청인	주소							
	전화번호((휴대전화)	전지	·우편주소				
	성명	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(외국인등록번호) 관		휴대전화 번호	<u>-</u>	가구원 포함· 제외사유(필요시)		
	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		
②동의자 (신청인의	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		
가구원)	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		
	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		
					[] 안내 문자 수신 동의			
※ "동의자(신	청인의 가 ⁻	구원)" 작성란이 부족	한 경우에	⊥ 는 별도로 작성해 첨부합니다				
③[] 취업지원	"기준 중위 무를 이행 "이행기간 인 사람	H소득"이라 합니다)의 한 경우 「구직자 취업 "이라 합니다)을 가산합	100분의 10 [촉진 및 실 합니다] 중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00 이하인 사람 또는 15~34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2	∥[「병역법」 져 령」 제2조제5 기준 중위소득의	제3조에 따른 병역의 항에 따른 기간(이하 100분의 120 이하		
서비스 수급자격	* 65~69세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인 사람 및 15~34세(「병역법」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기간을 가산합니다) 중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을 넘는 사람은 취업취약계층으로 지원합니다.							
	취업취약7	예층 여부 1선택 약계층에 해당하는 경	[] 우 4쪽 작성	2선택[] 해 성방법의 취업취약계층 표를 침	당 없음 [남고하여 해당 t] 번호를 적습니다.		
	충족한 사 ① 가구단 ② 가구원 경우 이형	람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0 일이 소유하고 있는 재(백기간을 가산합니다)는	니 기준 중위 산의 합계약 - 「구직자	업경험이 100일(또는 800시간 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村이 4억원[15~34세(「병역법」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하는 금액(이하 이 서식에서 '	제3조에 따른 과한 법률 시행	: 병역의무를 이행한 령 : 제3조제3항 단		
④[]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	선발형(비 ① 및 ②를 ① 가구:	경제활동인구): 15~69 를 모두 충족한 사람	9세 중 최i	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g 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				
	① 가구:	년): 15~34세(15~34/ 래 ① 및 ②를 모두 충 단위의 월평균 총소득0 실이 소유하고 있는 재	│ 기준 중위]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 백이 고시금액 이하	이행한 경우 (이행기간을 가산합니		
		급자격 인정을 받지 경우, 취업지원서비스			의함 []등	통의하지 않음		
				」 제8조제1항·제2항 및 -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		규칙 제4조제2항		

년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・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첨부서류 해당 없음(다만, 공적 자료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) 수수료 없음 ※ 아래 난은 적지 않습니다. 수급자격 인정 유형 : 처 리 []인정 []불인정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: 소장 (과장) 결재 연월일 청장 결 재 담당 팀장 (지청장)

취업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1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지원 내용

- 기관: 고용노동부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에 따른 관할 직업 안정기관,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제5호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• 운영하는 기관
- 지원 내용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(이하 "취업 지원서비스"라 함)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(이하 "구직촉진수당"이라 함)

2. 개인정보(DB)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.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·제공하는 과세 정보의 이용

3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• 이용 항목

-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인의 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: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정보통신망, 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13 조의2제1항제7호의 정보전산망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·운영하는 정보통신망,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19호의 국세정보통신망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, 「전자정부법」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28호의 지방세 정보통신망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원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: 사업자등록부, 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보훈급여·공무원연금·공무원재해보상급여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·별정우체국연금·농업직불금·농지연금의 가입 여부, 가입 종류, 소득정보, 부과액 및 수급액, 건물, 토지, 자동차,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, 주민등록표등본·초본, 가족관계등록부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), 장애 정도,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,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, 출입국 정보
-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 보

4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-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, 수급자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: 30년

5. 제3자 제공 및 공유에 관한 사항

- 제공 목적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갖추었는지 결정하기 위한 수급 요건의확인 조사
- 제공받는 자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같은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국세청등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의 장
-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: 성명,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 등
-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: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

6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

-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7.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과 관련하여 등록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위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			· · - · ·
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	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 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(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포함)에 동의합니다.	[]동의함]동의하지 않음
민감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	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 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3조에 따라 본인의 민감정보 제공 (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포함)에 동의합니다.	[]동의함]동의하지 않음
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	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 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제공(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ㆍ이용 및 제공을 포함)에 동의합니다.	[]동의함]동의하지 않음
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	본인은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 무서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과세정보를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구축·운영하는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	[]동의함]동의하지 않음
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	본인은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신청 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으로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	[]동의함]동의하지 않음
불이익 안내 확인 여부	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 거부권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를 확인하였습니다.	[]확인함]확인하지 않음

- ※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.
- ※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개인정보 제공, 불이익 안내의 동의 또는 확인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			년	월	일
		신청인		(서명 또는	= 인)
		가구원 1		(서명 또는	= 인)
		가구원 2		(서명 또는	= 인)
		가구원 3		(서명 또는	= 인)
		가구원 4		(서명 또는	= 인)
		가구원 5		(서명 또는	= 인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. 검정고시합격증명서 3. 고등학교졸업증명서 4. 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 5. (국세)납세증명서 6. 병적증명서 7.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8. 사업자등록증명 9. 소득금액증명	10.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1. 주민등록표 등 • 초본 12. 장애인증명서 13.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4.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5. 폐업사실증명 16. 한부모가족증명서 17. 휴업사실증명	명	수 ⁻ 없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가구원에 대한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- *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* 14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합니다.* 아래의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인	(서명 또는 인)
가구원 1	(서명 또는 인)
가구원 2	(서명 또는 인)
가구원 3	(서명 또는 인)
가구원 4	(서명 또는 인)
가구원 5	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1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격 확인·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,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결정이 취소되거나 구직촉진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다른 사람과 공모한 경우에는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3항에 따라 그 공모한 사람도 구직촉진 수당 등의 반환명령과 추가 징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.
-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자에 선정되거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과 이를 공모한 사람은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- 5.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(선발형)은 예산의 범위에 따라 그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작성방법

- 1. ① 및 ②란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구원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. ②란에 적은 가구원의 인적사항 등은 신청인의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(동의하는 경우)에 활용됩니다.
- 2. ③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([])에 "√" 표시합니다.

③란의 '취업취약계층'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. 아래 각 분류의 세부 요건은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(「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」 별표 1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	기초연금 수급자 등	2	생계급여 수급자	3	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	4	북한이탈주민	(5)	여성가구주
6	결혼이민자	7	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	8)	신용회복지원자	9	위기청소년 등	10	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
11)	건설일용직 근로자	12)	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	(13)	취업맞춤특기병	(14)	미혼모(부) • 한부모	(15)	청소년부모
16	구직단념청년	17)	청년	18	대학교(대학원) 졸업예정자	19	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사람	20	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 사업장의 실직자
21)	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해당 이직자	22	「기업 활력 제고 를 위한 특별법」 에 따른 참여자	23	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	24)	영세 자영업자	25	소상공인 재취업 · 재창업 지원 추천 을 받은 자
26	노무제공자 등	27	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						

3. ④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([])에 "√" 표시합니다.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